

발송번호: 7-7-2008-003198566

발송일자: 2008.04.10



김장감

주심	심판장	결재
전결	김장감	

특허심판원  
제 7 부  
심 결 등 본 송 달 서

청 구 인 성 명 영신프라텍(주)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9-8(21BL-10LT)

대 리 인 성 명 노장오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 포레스텔 빌딩  
1201호(노장오특허법률사무소)

피 청 구 인 성 명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명  
주 소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내

대 리 인 성 명 이덕록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17  
예일패트빌딩(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 판 번 호 2007당3219

사 건 의 표 시 특허등록 제0722518호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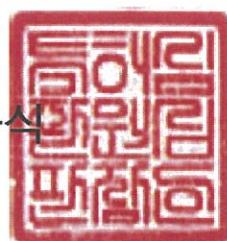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결문등본을 송달합니다.

첨 부 심결문 등본1통. 끝.

2008.04.10

심판장

강완식



1. 이건 심결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우편에 의한 발신주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제기 기간 내에 소장이 법원에 도달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심판정책과 담당자 이원석 ☎ 042)481-5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청 콜센터☎ 1544-80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를 방문하시면 심판진행상황 및 특허심판절차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 허 심 판 원  
제 7 부  
심 결

심판번호 2007당3219

사건의표시 특허 제722518호 발명『경질 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의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청구인 영신프라텍(주)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9-8(21BL-10LT)

대리인 변리사 노장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3 코오롱 포레스텔 빌딩 1201  
호(노장오토허법률사무소)

피청구인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내  
주식회사 티피에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538-1  
위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17 예일팩트빌딩(예일국제특허법률  
사무소)

위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변리사 구창모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9-17 예일팩트빌딩(예일국제특허법률  
사무소)

사무소)

##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의 취지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기재된 “경질 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은 특허 제722518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각 기재로부터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이 건 특허발명

- ① 명칭 : 경질 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
- ② 권리자 : 피청구인
- 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6. 03. 16./제2006-24352호)
- 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7. 05. 21./특허 제722518호)

#### 나. 이 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염화비닐계 수지, 발포제, 발포조제, 내열안정제, 활제, 가공조제, 충격 보강제, 가소제, 안료, 층진제를 포함하는 경질 폴리염화비닐(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 상기 염화비닐계 수지로는 염화비닐 단독 중합체,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 염화비닐과 아크릴산 에스테르의 공중합체 및 염화비닐과 에틸렌의 공중합체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중합도 700~900인 염화비닐계 수지 100 parts를 상기 발포제로는 아조 디카본아마이드, 디니트로소 펜타메틸렌 테트라민, 및 옥시 비스 벤젠 설포닐 하이드라지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발포제 0.1 내지 2 phr를 상기 발포조제로는 요소계 조제, 파라톨루엔 징크 설페이트, 징크 스테아레이트, 징크 로레이트, 징크 옥토에이트, 징크 카보네이트, 징크 프로피오네이트, 바륨 스테아레이트, 바륨 리시놀케이트, 칼슘 스테아레이트, 칼슘 카보네이트, 트리베이직 레드 설페이트,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 레드 옥사이드, 카드뮴 아세토 아세테이트, 카드뮴 도데실 머캡타이드, 카드뮴 바륨 로레이트, 카드뮴 아밀 포스파이트, 카드뮴 옥사이드, 틴 메톡시 말레이트, 디부틸 틴 말레이트, 스트론튬 나프테네이트, 스트론튬 징크 로레이트, 마그네슘 옥사이드, 아세트산, 석시닉산, 살리실산, 아세틸 살리실산, 설파믹산, 로랄킬 인산, 말릭산, 무수 포타슘 카보네이트 및 보락스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발포 조제 0.1 내지 2 phr를 상기 내열안정제로는 Ba의 유기산 금속염, Pb의 유기산 금속염, Zn의 유기산 금속염, Ca의 유기산 금속염, Cd의 유기산 금속염 및 Sn의 유기산 금속염으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내열안정제 1 내지 3 phr를 상기 활제로는 스테아르산,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 및 칼슘 스테아레이트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과 에폭시화 지방산 에스테르, 중저분자량 지방산 에스테르,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왁스 및 몬탄 왁스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활제 0.3 내지 7 phr를 상기 가공 조제로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 0.5 내지 5 phr를 상기 충격 보강제로는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부

틸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타이렌 공중합체 및 메틸 메타크릴레이트/부타디엔/스타이렌 공중합체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충격 보강제 0.5 내지 5 phr를 상기 가소제로는 에폭시화 콩 오일, 에폭시화 아마인 오일, 디 아이소노닐 아디페이트, 디 옥틸 세바케이트, 세바식산, 에틸렌글리콜, 프로판 디올, 부탄 디올, 네오펜틸 글리콜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가소제 1 내지 3 phr를 상기 안료로는 백색 안료인 루타일 타입의 이산화 티탄 1 내지 10 phr를 상기 충진제로는 탄산 칼슘 및 탈크로 구성되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의 충진제 2 내지 10 phr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질 폴리염화비닐(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이하 '이 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머지 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청구항 2. 제 1항 기재의 경질 폴리염화비닐(PVC) 발포 쉬이트용 수지 조성물을 압출기의 호퍼로 공급한 후 150~195°C로 가열된 배럴과 T-다이를 통과시킨 다음 냉각기를 거쳐 가공함으로써 얻은 균일하게 분포된 독립 기포를 갖고 표면이 유려한 발포율 30~60%, 밀도 0.6~1.0 g/cm<sup>3</sup>의 경질 폴리염화비닐(PVC) 발포 쉬이트.

#### 다. 확인대상발명

##### (1) 2007. 11. 19.자 심판청구서에 의한 확인대상발명

『폴리 염화비닐계 수지(주식회사 한화석유화학 'P-800' 제품)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발포제(아조디카본아마이드, 주식회사 금양 'AZO-K' 제품) 0.4 ~ 0.6 중량부; 복합 '열안정제(단석산업 'KD-300G13' 제품) 5 ~ 7 중량부; 활제(폴리에틸렌 왁스) 0.1 중량부를 포함하고, 가공조제(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수지, 주식회사 LG화학 'PA-930' 제품) 6 ~ 8 중량부; 충진제(탄산칼슘, 주식회사 동호칼슘 'TL-100' 제품) 6 ~ 10 중량부 및 안료(이산화티탄, 중국산 'SR-608' 제품) 3 중량부를 포함하되 상기

복합 내열안정제는 내열안정제 전체 100 중량부 기준으로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DLP ; Dibasic Lead Phosphite) 40 ~ 50 중량부;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DBL ; Dibasic Lead Stearate) 5 ~ 10 중량부; 칼슘 스테아레이트(Ca-St ; calcium stearate) 10 ~ 15 중량부 및 바륨 스테아레이트(Ba-St ; Barium Stearate) 5 ~ 10 중량부, 기타 미량의 성분들 8~15 중량%를 함유하고, 상기 가공조제는 가공조제 100 중량부에 대하여 10 ~ 500 중량부의 가소제를 내포한 캡슐형의 입자상인 폴리염화비닐계 발포 조성물을 120°C ~ 130°C에서 8 ~ 15분 동안 가열, 혼련시키고 상기 가열, 혼련된 조성물을 압출기에 공급하여 160°C ~ 210°C의 배럴에서 겔화시킨 후 금형을 통과하도록 하여 발포, 성형한 것.(이하 '확인대상발명 1'이라 한다.)』

(2) 2008. 02. 04.자 보정서에 의한 확인대상발명

『폴리 염화비닐계 수지(주식회사 한화석유화학 'P-800' 제품) 100 중량부에 대하여, 발포제(아조디카본아마이드, 주식회사 금양 'AZO-K' 제품) 0.4 ~ 0.6 중량부; 복합 내열안정제(단석산업 'KD-300G13' 제품) 5 ~ 7 중량부; 활제(폴리에틸렌 왁스) 0.1 중량부를 포함하고, 가공조제(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계 수지, 주식회사 LG화학 'PA-930' 제품) 6 ~ 8 중량부; 충진제(탄산칼슘, 주식회사 동호칼슘 'TL-100' 제품) 6 ~ 10 중량부 및 안료(이산화티탄, 중국산 'SR-608' 제품) 3 중량부를 포함하되 상기 복합 내열안정제는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DLP ; Dibasic Lead Phosphite), 디베이직 레드 스테아레이트(DBL ; Dibasic Lead Stearate), 칼슘 스테아레이트(Ca-St ; calcium stearate), 바륨 스테아레이트(Ba-St ; Barium Stearate), 기타 미량의 성분을 함유한 폴리염화비닐계 발포 조성물을 120°C ~ 130°C에서 8 ~ 15분 동안 가열, 혼련시키고 상기 가열, 혼련된 조성물을 압출기에 공급하여 160°C ~ 210°C의 배럴에서 겔화시킨 후 금형을 통과하도록 하여 발포, 성형한 것.(이하 '확인대상발명 2'라 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발명 1은 이 건 제1항 특허발명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발포조제, 충격보강제, 가소제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이 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는 내열안정제로 유기산 금속염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확인대상발명 1은 무기산염(1종) + 유기산염(3종)이 적정 함량으로 복합된 것을 사용하고 있고, 내열안정제, 활제, 가공조제의 구성비에 있어서도 양 발명은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 1은 이 건 제1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이 건 제1항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 1은 구성성분 및 구성비가 상이하므로 상이한 구성성분 및 구성비를 갖는 이 건 제2항 특허발명의 폴리염화비닐계 발포 쉬이트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확인대상발명 1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 2는 확인대상발명 1의 복합내열안정제로 “KD-300G13”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기재하였고, “KD-300G13” 제품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 성분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기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 1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 변경한 것도 아니다.

###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발명 1이 확인대상발명 1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대용 사진의 “프라폼”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확인대상발명 1의 구성성분 및 구성비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 3. 이해관계

(갑) 제2호증(경고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해

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이다.

#### 4.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1) 보정사항 및 절차 경위

이 건 심판청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확인대상발명 1에는 "... 상기 복합 내열안정제는 내열안정제 전체 100 중량부 기준으로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DLP ; Dibasic Lead Phosphite) 40 ~ 50 중량부; ... 바륨 스테아레이트(Ba-St ; Barium Strearate) 5 ~ 10중량부, 기타 미량의 성분들 8~15 중량%를 함유하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 2에는 "... 상기 복합 내열안정제는 디베이직 레드 포스파이트(DLP ; Dibasic Lead Phosphite), ... 바륨 스테아레이트(Ba-St ; Barium Strearate), 기타 미량의 성분을 함유한 ..."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당 심판부는 이 건 특허발명의 내열안정제에 대응되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 1의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성분의 구성비의 단위를 중량부와 중량%로 혼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 미량성분이 복합 내열안정제의 구성인지, 기타보조제의 구성인지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확인대상발명 2는 확인대상발명 1에 기재되어 있던 복합 내열안정제의 구성성분과 기타 미량 성분의 구성비를 삭제하여 성분비가 한정되어 있는 발명을 성분비가 한정되지 않는 발명으로 확장(이하 '이 건 보정사항'이라 한다.)시킨 발명이라는 취지의 보충요구서를 2008. 03. 11자로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복합내열안정제로 "KD-300G13"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기재하였고, "KD-300G13" 제품의 성분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확인대상발명 1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도 아니므로 요지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2) 판단

이 건 보정사항은 복합 내열안정제의 구성성분과 기타 미량 성분의 구성비를 삭제한 보정으로, 이러한 보정으로 인하여 특정 구성비로 구성된 발명이 구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발명으로 확장 변경된 것이므로 결국 확인대상발명 2는 확인대상발명 1의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특허발명의 주요 구성부로 기재되어 있는 구성성분의 특정 구성비를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2는 이 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이 특정 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확인대상발명 1 또한 구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 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이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 1은 구성의 기재가 불명확하며, 확인대상발명 2는 확인대상발명 1의 요지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구성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1 및 확인대상발명 2는 이 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5.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2007. 4. 10.

심판장

심판관

강완식



주 심

심판관

김장강



심판관

이하연

